위법계약해지 신청서

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귀하

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(위법계약해지)에 따라 신청인(본인)은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.

■ 고객 정보

성 명	
생년월일(사업자번호)	
주 소	
연락처	
계약체결일	20 년 월 일
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실을 안날	20 년 월 일

※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(위법계약해지)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해지요구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■ 금융소비자 제출자료

금융상품 명칭	
법 위반사실	
위반사실 근거자료 (별지 제출 필수)	

※ 해지요구기간 :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(위법계약해지)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) 위법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계약해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인/서명)